

학교운영회의 회의록

2022년 10월 12일(화) 15:30

간사

위원장

학교장

의사일정

1	2022학년도 6학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대한 건
2	2023학년도 검·인정 교과서 선정 심의 건
3	2022학년도 3학년 2학기 1일형 주제별 체험학습 건
4	2023학년도 서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아모집·선발규정 건
5	2022학년도 서촌초등학교 회계 2차 추경 예산(안)심의 건
6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추천 건
7	2022학년도 서촌초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 건

· 위원장: 운영위원 정원 11명중 11명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학부모, 지역) 11인

권○분	임○경	이○숙	최○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원	박○진	고○주	
출석	출석	출석	

출석위원(교원) 4인

최○숙	김○진	배○진	김○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제1안건> 2022학년도 6학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 건입니다.

1. 제안자 발언이 있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을 통해 확장된 배움의 기회를 얻고자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정 및 장소

일시	대상	장소	준비물
2022년 12월 1일(목) 08:40 ~ 15:10	6학년 82명 (1반 28명, 2반 26명, 3반 28명) 각 반 담임교사 3명, 전담교사 3명 총 6명	롯데월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도시락, 간식, 물, 멀미약, 우산(우천시), 여분의 마스크

- 관련 교육과정

교과	단원	시수	활동 주제
과학	에너지와 생활	2	우리 주변에서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예 찾아보기
미술	사물에 생명을! 애니메이션	2	테마파크 속 다양한 사물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체육	여가와 운동생활	2	여가활동의 종류를 알고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나.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학운위원 : 도시락을 학생 개개인 지참이라고 하는데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요?

- 안전상 이유로 식당 이용 관광객이 많아서 동선이 섞이지 않도록 모둠별 점심식사 시간을 조율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회의 후 식사 장소에 최선으로 적당한 장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학운위원장 : 더이상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 예.

▶ 학운위원장 :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제2안건> 2023학년도 검·인정 교과서 선정 심의 건 심의 건입니다.

1. 제안자 발언이 있겠습니다.

검·인정 교과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우수한 교과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과학교실에서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전시하여 학부모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가. 제안내용입니다.

- 대상: 2023학년도 검·인정 교과서 선정 심의

- 인정 교과서 선정

1) 1학년 적응교재: <즐거운 우리 학교>

2) 3~6학년 창의적 체험활동(독서논술) 교재: <손에 잡히는 교과서 독서.토론.논술>

3) 5~6학년 보건 교재: <함께하는 보건>

-> 인정 교과서 교과협의회 협의 결과 변동 없이 그대로 사용

- 3~6학년 검정 교과서(기간본) -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영어

-> 교과협의회 협의 결과 변동 없이 그대로 사용

- 5~6학년 검정(신간본) 교과서 선정

1) 2023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검정 교과서(신간본) 수학, 사회, 과학을 교과협의회

공정한 심사를 통해 추천된 3종 교과서의 선정 및 심의

과목	5학년						6학년					
	수학		사회		과학		수학		사회		과학	
순위	출판사	저자	출판사	저자	출판사	저자	출판사	저자	출판사	저자	출판사	저자
1	천재 교과서	한대희	천재 교육	김정인	천재 교육	신영준	천재 교과서	한대희	천재 교육	김정인	천재 교육	신영준
2	동아 출판	박교식	천재 교과서	박용조	미래엔	신동훈	천재 교과서	박만구	비상 교육	설규주	천재 교과서	이상원
3	천재 교과서	박만구	미래엔	전종한	비상 교과서	이수환	동아 출판	박교식	아이스 크림 미디어	한춘희	금성 출판사	박일우
									천재 교과서	박용조		

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 예.

▶ 학운위원장 :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제3안건> 2022학년도 3학년 2학기 1일형 주제별 체험학습 건 입니다.

1. 제안자 발언이 있겠습니다.

교내에서 한정된 자료에 의하여 이론에만 치중했던 학습을 학교 밖에서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습의 흥미를 높이고, 바른 인성과 협동 정신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가. 제안내용입니다.

가. 일정 및 장소

일시	대상(예상)	장소	준비물
2022년 11월 18일(금) 09:00~14:00	3학년 학생 82명 중 신청자, 3학년 담임교사 총 3명, 3학년 교육활동도우미 총 3명	한국 만화 박물관	식수(물), 도시락, 필기도구, 멀미약(필요할 시)

나. 소요경비(예상)

항 목	전체금액	경비산출 내역	학생 1인당 경비 (예상)	비 고
차량임차비	1,320,000원	-버스 1대당 440,000원 -440,000원×3대=1,320,000원 -1,320,000원÷88명=15,000원	15,000원	참가 인원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장료	336,000원	-1인당 4,000원 -학생 20명 당 인솔자 1명 무료 -4,000원×84명=336,000원	4,000원	
체험활동비	492,000원	-1인당 6,000원 -6,000원×82명=492,000원	6,000원	
여행자보험	47,280원	-학생 1인당 480원 480원×82명=39,360원 -인솔자 1인당 1,320원 1,320원×6명=7,920원	480원	
총 계	2,195,280		25,480	

- ☞ 체험학습 경비는 수요자 부담 원칙으로 함.
- ☞ 차량임차비 잔액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사용함.
- ☞ 참가 신청 후 당일 불참자의 차량임차비 및 여행자보험비는 반환하지 않음.
- ☞ 체험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며, 급식은 실시하지 않음.
(특수반 학생의 경우 특수학급에서 수업 참여)

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학운위원 : 3학년과 6학년 여행자 보험 경비 부담에서 차이가 보입니다.

- 그동안 학교 예산에서 여행자 보험을 부담해왔는데 3학년, 6학년에서 차이나지 않도록 다시
알아보고 형평성에 차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운위원장 : 더 이상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 예.

▶ 학운위원장 :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제4안건> 2023학년도 서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아모집·선발규정 건

1. 제안자 발언이 있겠습니다.

2023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계획(2022.9.23.)에 의거하여 공정한 유아모집·선발과 선정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위함입니다.

가. 제안내용입니다.

2023학년도 서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모집·선발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서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모집”이란 제5조의 유아모집·선발계획과 제6조의 유아모집·선발요강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선발”이란 제2호에 따라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서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선발인원) 유아 선발인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본원의 정원 내의 인원으로 한다.

제5조(선발 대상 및 인원) 본원의 모집 선발 대상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과정 (9:00~13:00 1일 4시간 운영)				오후별도 방과후과정 (13:00~17:00 1일 8시간 운영)				
대상(연령)		학급수	정원	모집인원	대상(연령)	학급수	정원	모집인원
만3세 · 만4세	2019.1.1. ~ 12.31. 2018.1.1. ~ 12.31.	1	16명		정원에서 재원생 및 특수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인원	만3세 ~ 만5세 혼합반	1	
만5세	2017.1.1. ~ 12.31.	1	26명					
총	·	2	42명	총		1	20명	

※ 만3,4세 및 만 5세 모집인원은 연령별 정원에서 재원생 및 특수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인원을 의미한다.

※ 연령별 학급당 정원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정원수에서 재원생 및 특수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선발한다.

※ 방과후과정 내 연령별 모집인원은 방과후 정원 내 50%로 산정한다.

※ 조기입학(만2세)은 해당하지 않고, 취학유예자는 허용하지 않는다.

※ 무상교육 지원범위는 최대 3년으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유아모집 종료후, 만 3,4세 교육과정반 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와 서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총 정원의 50%를 넘지 않는 경우 학급이 감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만3,4,5세 혼합연령 1학급으로 운영한다. (방과후과정반은 변함없이 만 3세~만 5세 혼합반으로 운영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학부모에게 공지하여 유아모집한다.)

제5조(모집 시기 및 방법) 본원의 유아모집 시기는 경기도교육청 유아모집 선발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모집한다.

제6조(재원생의 재원방법) 유아 모집 공고 전, 현재 재원 중인 만 3세 및 만 4세반 유아를 대상으로 재원신청 기간을 두고 재원생을 모집한다. (방과후과정 포함)

① 재원 신청 기간 이후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처음학교로를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재원 신청 기간 이후에는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유아 모집 공고의 공정성을 위해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제7조(방과후과정 모집·선발방법) 방과후과정은 방과후과정 정원에서 방과후과정 재원생을 제외한 인원을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를 통해 모집한다.

① 방과후과정은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및 맞벌이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만3세 ~ 만5세 혼합연령 1학급(학급당 정원 20명)을 모집한다.

② 우선모집 합격자 중 1~3순위 합격 유아는 방과후과정에 우선 선발한다.

③ 방과후과정 내 각 연령별 비율은 방과후 정원의 50%로 구성하여 모집한다.

- ④ 방과후과정은 해당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모집 및 선발이 가능하며, 방과후과정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일 경우 우선 연락 후, 방과후과정을 반려한다.
- ⑤ 유아 모집 종료 후, 모집 연령별 비율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및 맞벌이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선발한다.
- ⑥ 유아 모집 종료 후, 방과후과정 모집인원이 방과후과정 정원 미달인 경우, 방과후과정을 희망하는 일반 가정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선발한다.
- ⑦ 유아 모집 종료 후 결원으로 인한 추첨 시에는 연령별 비율을 두지 않고 추첨한다.

제8조(우선순위 모집·선발방법) 본원 유아 모집 시 다음 순위에 의하여 우선 선발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우선 적용하며 방과후과정에 우선 선발한다.

구분	우선순위		적용범위	제출서류	비고
전국공통용	유치원 우선	재학중인 유아	최우선 입학	재원신청서 1부	유아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및 유치원 생활을 고려
		특수교육대상자		해당없음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여 배치
	1	법정저소득층 가정	정원 내 100%	'처음학교로'에서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연령별 모집인원의 3%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가정	연령별 모집인원의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②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기타 우선순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우선순위		적용범위	제출서류	비고
유치원 원장 재량	4	쌍생아	각 연령별 모집인원의 30% 적용	주민등록등본 1부	저출산대책 반영
		재학유아의 형제·자매		주민등록등본 1부	입학이후 유치원을 같이 다니는 경우로 한정
		사회적 배려대상자		해당시설 입소 확인서 1부	아동복지시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모자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다자녀 가정		주민등록등본 1부	저출산 대책 반영, 세자녀 이상태아는 인정하지 않음)
		다문화 가정		기본증명서 1부	교육복지 정책 반영
		장애부모 가정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부모의 장애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 ※ 소수점 이하는 올림
- ※ 우선순위 대상자는 접수기간내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인정되며, 유치원 대표메일 (seochon4085@korea.kr) 및 지정 기간 내 인편으로 제출
- ※ 우선순위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1가지 조건을 선택하여 접수

제9조(유아모집 대기자 및 추가모집 관리) 본원의 유아모집 대기자는 유아모집 선발관리시스템을 통해 선발된 대기자를 의미한다. 대기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2023학년도 입학식 전일까지 오프라인으로 관리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추가모집은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 및 현장접수를 이용하여 진행한다. 제10조(유아모집·선발 공고) 본원의 유아모집·선발을 위한 공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고방법 : 입학관리시스템 사이트(모집요강 탑재) 및 학교 홈페이지, 현수막
- ② 공고문에 포함할 내용 : 유아모집 요강 표준안에 따름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서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육공동체 회의 후 시행한다

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학운위원 : 혼합반의 경우 5,6세가 함께 수업하는 경우 입니까?

- 네. 하지만 1:1 개인 수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모든 활동에 수익자 부담없이 매우 양질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학운위원장 : 더 이상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 예.

▶ 학운위원장 :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제5안건> 2022학년도 서촌초등학교 회계 2차 추경 예산(안)심의 건 심의 건입니다.

1. 제안자 발언이 있겠습니다.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서촌초등학교 회계 2차 추경 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2년간 학예회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학예발표회가 진행된 관계로 전년도에 예산편성에 비해 학예회가 증액 되었습니다.

가. 제안내용입니다.

- 세입액: 1,837,042,000원

- 세출액: 1,837,042,000원

- 2022회계 예산 추가사항 추경반영 및 예산 부족 사업 등 반영후 추경편성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 세부 사항은 지난주 보낸 붙임 자료를 토대로 참고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 예.

▶ 학운위원장 :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제6안건> 2022학년도 학교 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추천 건입니다.

1. 제안자 발언이 있겠습니다.

2022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중 아동의 전출로 인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감,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제1항에 따라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가. 제안내용입니다.

1) 2022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1명 추천

※ 현재 학교폭력 전담기구 총5명: 교감, 교무부장,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1명 (학부모 위원이 1/3이상 되어야 함)

2) 임기: 2022.9.5.~2023.2.28.(1년, 학년도 단위)

3)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학운위원장 :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추천해주십시오.

학운위원: 박○○ 학부모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학운위원장 : 다른 분을 더 추천 받겠습니다.

학운위원: 박○○ 학부모님 추천에 동의 합니다.

학운위원들: 모두 추천에 동의 합니다.

▶ 학운위원장 : 박○○ 학부모님이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제7안건> 2022학년도 서촌초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 건

1. 제안자 발언이 있겠습니다.

현행 학생 생활 인권규정에 대한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의 개정 의견을 수렴 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개정된 학생 생활 인권규정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제안내용입니다.

- 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3항
- 나. 초·중등교육법 제17조, 18조 4항, 제20조 제3항
-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제9호, 제30조, 제1조 제7항
- 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
- 마.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6조, 제27조, 제28조

- 주요내용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개정 요구 및 시흥교육지원청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붙임1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붙임 1. 2022학년도 서촌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2022학년도 서촌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1부.

서촌초 학교생활인권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항목	현행	개정안	개정
총칙 제2조 [목적]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 학교 내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 확인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및 구성원의 책무] ①(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 학교 내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 확인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구성원의 책무)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법인' 등 포함)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 역시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를 인권규정이 학생뿐만 아니라 준수해야 함을 강조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제4조 ①	① (구성) -학생들의 선도 및 포상을 심의하기 위해 교무안전기획부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교감, 교무안전기획부장, 학년부장,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한다. - 교감은 본회의 위원장이 되고, 교무안전기획부장은 부위원장이 되며 필요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주무 교사는 위원회 사무(협의 내용을 기록·정리)를 주관한다.	① (구성) -학생들의 선도 및 포상을 심의하기 위해 <u>학교장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u> - <u>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 <u>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u> <u>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 <u>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교사, 기타위원 등)</u> <u>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u> <u>※ 참고사항</u>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으로 기관 -교무안전기획부가 아닌 (교육청 지침 반영) -각 위원별 역할을 구체화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 외부인사 위촉 조항 삽입

		<p><u>위 위원 중 기타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u></p> <p>▶ <u>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u></p>	
<p>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 [기능 및 임무]</p>	<p>① (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부적응 행동을 예방,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주무 교사의 발의와 교감(위원장)의 승인으로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주무 교사, 교무안전기획부장, 학년부장, 담임교사와의 자체 회의를 통하여 심의할 수도 있다.</p> <p>② (임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분석 연구 - 기본대책 수립을 위한 자문 - 선도(징계) 및 실제 지도 	<p>①(기능)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부적응 행동을 예방,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p> <p>②(임무)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u>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u></p> <p><u>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u></p> <p><u>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u></p> <p><u>4.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시지도</u></p> <p><u>5.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u></p>	<p>-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으로 이관</p> <p>-임무 내용을 구체화</p>
<p>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8조 [징계 외의 지도방법]</p>	<p>제8조 징계 외의 지도방법</p>	<p>제8조 <u>생활교육 처분 외의</u> 지도방법</p>	<p>용어 통일</p>
<p>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9조 [학생 생활지도 기준]</p>	<p>① 교내외 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무단 투기, 껌이나 침을 아무 곳에 뱉는 행위 - 실내외 질서 위반(복도 통행시 괴성이나 소란한 행위, 실내에서 뛰는 행위, 난간을 타고 내려오는 행위, 사고 유발행위 등) - 배식할 때 질서 위반 - 욕설행위, 거짓말, 낙서 - 무단 무단출입 및 수목훼손 - 무단 외출, 교통질서 위반, 정보통신 규정 위반 - 흡연, 음주, 유해물질 흡입 - 폭력행위, 도박행위, 불법 이성교제 - 학교 기물 파괴, 훼손, 금품 갈취 및 절도 행위 <p>② 교육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준비(교과서, 공책, 준비물 등)나 과제 처리가 불성실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 수업 시간에 다른 사람의 학습을 방해했을 때 - 수업 시간에 학습에 태만하고 방관적일 때 <p>③ 교사와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의 교육적 지시나 지도에 순응하지 않고 반항했을 때 - 학급 내 학생과 교사 간 합의된 내용을 잘 지키지 않을 경우 <p>④ 학생과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나 상·하급생에게 별명을 부르거나 놀렸을 때 - 친구나 상·하급생을 때리거나 괴롭혔을 때, 싸웠을 때 - 2명 이상이 편을 짜 싸움을 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한 경우 - 친구나 상·하급생을 꺾여 금품이나 물건을 갈취하거나 불량 집단으로 유인했을 때 	<p><u>학생 선도 사항은 다음과 같다</u></p> <p><u>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위반하여 교육목적 상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u></p> <p><u>② 법령을 위반하여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u></p>	<p>-기존 생활지도 기준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p>
<p>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1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p>	<p>제11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p>	<p><u>제11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u>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도 절차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정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u></p>	<p>-소집시기 구체화</p>
<p>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2조</p>	<p>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주무 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p>	<p>② <u>학생생활교육위원회 담당교사</u>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p>	<p>-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으로 이관</p> <p>-이의 제기 방법에 대해</p>

<p>[생활교육 처 분의 심의 및 재심의]</p>	<p>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며 보호자와 학생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p> <p>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결과 통지 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한다.</p>	<p>부여하며 보호자와 학생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p> <p>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결과 통지 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의 제기는 조치가 있을 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p> <p>⑤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을 을 안 날부터 10일내에 도교육청 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한다. 다만 정계조정위원회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p>	<p>-교육청 지적사항 (이의제기, 재심청구 사항)</p>
<p>학생생활 교육위원회 제 17조 [생활교육 처 분내용 통보]</p>	<p>제17조 (생활지도 처분내용 통보) 생활지도 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지도 처분 내용을 통보하고 생활지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p>	<p>제17조 (생활지도 처분내용 통보) 생활지도 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지도 처분 내용과 이의제기, 재심절차 및 정계 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생활지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하며 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하지 않는다.</p>	<p>-교육청 지적사항 -통보 내용 공표 금지 조</p>
<p>학생생활 제 24조 [체벌금지] 제25조 [교사의 권한] 제26조 [훈계 및 훈육 등의 교육적 조 치]</p>	<p>제24조 (체벌금지)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권리이므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체벌(간접적인 체벌, 언어적 폭력, 모욕감, 협박, 위협 등 폭력에 준하는 지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다른 교육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지도하여야 한다.</p> <p>제25조 (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② 교육환경 조성 ③ 시정 요구 ④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⑦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p> <p>제26조 (훈계 및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p> <p>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p> <p>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인권 친화적 생활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적절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명령 -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기타 생활선도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적 조치 <p>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생활선도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6조 조항에 통합</p> <p>제26조 (훈계 및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p> <p>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p> <p>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인권 친화적 생활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적절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명령 -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기타 생활선도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적 조치 <p>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생활선도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권리이므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체벌(간접적인 체벌, 언어적 폭력, 모욕감, 협박, 위협 등 폭력에 준하는 지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다른 교육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지도하여야 한다.</p> <p>⑤(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7.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p>	<p>-중복 내용 통합</p>
<p>학생생활 제24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p>	<p>제24조(차별받지 않을 권리)</p> <p>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제24조(차별받지 않을 권리)</p> <p>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교육청 지적사항</p>

		<p>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p> <p>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학생생활 제25조 [의사표현의 자유]</p>		<p>제25조(의사표현의 자유)</p> <p>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p> <p>③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 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폐할 것을 안내한 후 철폐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폐할 수 있다.</p>	-교육청 지적사항
<p>교내생활 제39조 [시설이용 및 환경]</p>	<p>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아니 하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아니 하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문장 호응 및 맞춤형 교정
<p>교내생활 제41조 [동아리활동]</p>	<p>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나이스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p>	<p>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p>	승인 주체 명시
<p>교내생활 제42조 [여가활동]</p>	<p>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p>	<p>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 등을 타지 않는다.</p>	불분명한 조항 삭제
<p>생활지도 제50조 [안전지도]</p>	<p>⑦ 학생은 '서촌 어린이 안전수칙'을 준수한다.</p>	<p>⑦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p>	서촌 어린이 안전수칙 부 학생자치회 역할 부여
<p>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54조 [금지사항]</p>	<p>③ (금지활동)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p>	<p>삭제</p>	-교육청 지적사항 -현재 학교 운영 전반에 요구
<p>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54조 [금지사항]</p>	<p>⑧ (임기) 회장과 부회장, 각 부 부장과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임기 : 1학기 시작일부터 2학기 종료일까지</p>	<p>⑧ (임기)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전체 기간이며 각 부 부장과 대의원의 임기는 한 학기 단위로 하고, 각각 1기와 2기로 한다. - 임기구분 : 1기는 1학기 시작일부터 1학기 종료일까지, 2기는 2학기 시작일부터 2학기 종료일까지(6학년은 졸업일 까지)</p>	회장, 부회장과 부장들의
<p>장애학생인권 보호 규정</p>		<p>제6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p> <p>제55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가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하도록 한다.</p> <p>제56조 (책무)</p> <p>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7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p> <p>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p>	-특수교사 의견 반영

		<p>말한다.</p> <p>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p> <p>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p> <p>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p> <p>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p> <p><u>제58조 (차별판단)</u></p> <p>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p> <p>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p> <p><u>제59조 (교육에 관한 권리)</u></p> <p>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 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지도사,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u>제60조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u></p> <p>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년도의 학교 교육 환경과 실정을 고려하여 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p> <p><u>제61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u></p> <p>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 표현, 화통,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	--

학교생활인권규정

서촌초등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서촌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및 구성원의 책무)

①(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고, 학교 내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 확인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구성원의 책무)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법인' 등 포함) 및 교직원 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 역시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및 제3장의 학교규칙과 관련지어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1. ① (구성)

가. - 학생들의 선도 및 포상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장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교사, 기타위원 등)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 참고사항

위 위원 중 기타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2. ② (의결정족수) 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상, 벌에 관한 최종안을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 담임교사는 참석권과 진술권만 가지며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

나. - 최종 결정은 학교장이 하며 경우에 따라 교직원협의회를 소집하여 자문할 수 있다.

다.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③ (학교장 재심 요청)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및 임무)

① (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부적응 행동을 예방,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임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6조 (학생생활교육 처분원칙)

6. ① 생활교육 처분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7. ② 생활교육 처분은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8. ③ 생활교육 처분은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7조 (학부모 상담)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①~③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8조 (생활교육 처분외의 지도방법) 학교는 생활교육 처분 외의 지도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지도할 수 있다.

9. ① 성찰교실 운영

10. ② 규칙과 권리 생각하기

11. ③ 교내봉사

12. ④ 상담하기(위클래스 활용하기 등)

제9조 학생 생활지도 기준 학생 선도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위반하여 교육목적 상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

② 법령을 위반하여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제10조 3단계 인권 친화적 회복적(단계별) 학생 생활교육

13. ① (인권존중) 학생 의사에 반하는 지도방법 지양(지나친 용의 복장 규제 등)

14. ② (상호존중)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

가. - 회복적(단계별)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

나. - 1단계 : 약속단계(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생활 실천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교사 간 관계개선 ■ 같이 만들어가는 생활실천 약속 ■ 담임교사 중심 학교인권교육 책임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교육에 학생 참여 ■ 학교별 특색이 있고 실천 가능한 생활약속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

라. - 2단계 : 약속준수단계(회복적 생활교육, 비폭력대화, 자치활동 활성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약속 준수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문자서비스활용 ■ 비폭력 대화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회복적 학생 생활교육 ■ 학생자치회 중심 약속준수 캠페인 전개
---	---

마. - 3단계 : 선도단계(교육적 선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이 존중되는 단계적 학생 선도 조치 ■ 교육적 방법으로 최후까지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 선도 적용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 선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

제11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도 절차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정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12조 (생활교육 처분의 심의 및 재심의)

15.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에게 훈계, 교내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부과 등 학생선도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6.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담임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며 보호자와 학생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17.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결과 통지 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의 제기는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18. ④ 재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19. 재심청구 → 재심여부심의 → 재심결정 → 재심 → 학교장 결정 → 결과 서면 통보
- ⑤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내에 도교육청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한다. 다만 징계조정위원회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 (생활교육 처분의 종류와 기간) 생활교육 처분의 종류에 따른 기간은 다음과 같다.

20. ① 교내봉사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로 하고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21. ② 특별교육이수 : Wee클래스에서 단위학교특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이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 22.

제14조 (생활교육 처분의 방법)

23. ① 교내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교무인권기획부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24. ②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제15조 (생활지도 처분시 부과 내용) 생활지도 처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25. ① 교내봉사
 - 가. - 학교환경 미화작업
 - 나. - 교재, 교구 정비
 - 다. -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 라. - 기타
26. ② 특별교육 이수
 - 가.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나. -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다. -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라. -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16조 (심의 확정) 학생생활지도 처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27. ① 제13조 ①항 이상에 해당하는 사안부터는 반드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학교장의 재가로서 확정한다.
28. ②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17조 (생활지도 처분내용 통보) 생활지도 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지도 처분 내용과 이의제기, 재심 절차 및 징계 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생활지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하며 징계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하지 않는다.

제18조 (생활지도 처분 유보) 교내봉사 이하의 생활지도 처분 중의 학생이라도 교내에서 실시하는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생활지도 처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9조 (생활지도 처분 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생활지도 처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 (생활지도 처분의 해제) 생활지도 처분이 만료되면 그 생활지도 처분을 해제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의 서약서를 보호자 연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추수지도)

- 29. ①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선도처분 학생을 상담하고 상담 누가 기록을 작성한다.
- 30. ② 학년부장교와 상담교사의 협력으로 지속적으로 학생을 추수 지도한다.

제22조 (생활지도 처분 기간 중 재위반자 처리)

- 31. ① 생활지도 처분 기간 중 재차 위반 시는 차상위 단계의 선도처분에 처한다.
- 32. ② 생활지도 처분을 받은 학생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 (생활지도 처분의 양정 기준) 징계는 생활지도기준표에 의거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 33. ① 1단계 : 교내봉사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로 실시한다.
- 34. ② 2단계 : 특별교육이수는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학생인권

제24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5.

제25조 (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 할 수 있다.

제26조 (훈계 및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36.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37.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 가. -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나. -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다. -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라. - 적절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마. -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명령
 - 바. -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사. - 기타 생활선도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적 조치
- 38.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생활선도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39. ④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체벌(간접적인 체벌, 언어적 폭력, 모욕감, 협박, 위협 등 폭력에 준하는 지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다른 교육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 40. ⑤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1. -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42. - 교육환경 조성
 - 43. - 시정 요구
 - 44. -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45.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46.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제27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소지품 검사)

- 47.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48. ② 언제 어디서든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49. ③ 소지품 검사는 되도록 자제하되, 필요시 학생의 동의를 얻어 담임교사가 검사할 수 있다.
- 50. ④ 학생은 인화물질, 담배, 주류, 음란 영상물 혹은 도서,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 할 수 없다.

제28조 (용의복장)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단정한 몸차림을 해야 한다.

- 51. ①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 52. ②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하되, 실내·외를 구분하여 사용한다.(실내화, 운동화 등)
- 53. ③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 54. ④ 학생의 두발은 길이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29조 (사이버 생활) 학생은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5.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56.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57.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58.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59.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0.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61.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62. ⑧ 컴퓨터의 활용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만 사용한다.

제30조 (휴대전화 사용 및 정보통신기기 관리) 학생은 교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63.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단, 평가일에는 담임이 전부 수거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 64. ②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는 즉시 수거하고 26조 ②항의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한 후 돌려준다.
- 65. ③ 수업 중 정보통신기기(컴퓨터, MP3 등)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66. ④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며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31조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필요시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양심·종교의 자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는 강제적 종교 행사 참여나 대체 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을 강요할 수 없다.

제33조 (반성문, 서약서 등)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의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편지나 글로 대신할 수 있다.

제34조 (현장체험학습, 방과후 수업 등)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방과후수업 등을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체험 학습 신청서와 과 학부모 동의서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제35조 (현장체험학습) 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과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눈다.

- 67. ①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해 학교, 학년, 학급단위로 실시하며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심의, 사전답사, 사전선도, 사후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 68. ② 교외체험학습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학교의 장이 정한다.
- 69. ③ 사전답사는 동일한 교통편으로 실시한다.

제36조 (학생의견 청취)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7조 (자기정보결정권) 학생은 자신의 나이스 상의 생활기록부 및 교사의 평가 결과에 대해 열람·복사·수정·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2절 교내생활

제38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9조 (시설이용 및 환경)

- 70.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71.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아니 하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72.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73.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보건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심각할 경우에는 전문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74. ③ 남녀학생들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 75. ④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

제41조 (동아리활동) 방과후 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자율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과 같다.

- 76. ① 학생은 창체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및 방과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77.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78.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79. ④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80.

제42조 (여가활동)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과 같다.

- 81.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를 하고 화장실에 다녀온다.
 - 82.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도서실, 기타 특별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83.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활동은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한다.
 - 84.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85. ⑤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86. ⑥ 교정에서는 자전거, 각종 스के이트 및 보드 등을 타지 않는다.
 - 87. ⑦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 88. ⑧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에서만 허용된다.
89. 제43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90.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91.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92.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93.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94.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95.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44조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96.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97. ② 재취학,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98.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가.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 공적의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참가 등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경우
 - 라.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 마.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바.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99. ④ 학교장이 정한 1교시 수업시간까지 등교하지 않을 경우 지각으로 처리한다.
- 100. ⑤ 일과 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101. ⑥ 교과 시간(전담시간)에 결석한 경우,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결과로처리한다.
- 102. ⑦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103. ⑧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45조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104. ① 결혼 : 형제, 자매(1일)
- 105. ② 사망 : 부모(5일), 부모의 부모(5일), 부모의 조부모(5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2일), 부모의 형제·자매(1일) 단, 원격지의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 106. ③ 학교생활기록부 훈령 별지 8호(출결상황 관리)에 따른다.

제46조 (개근 및 정근) 개근과 정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07. ① 6년 개근 : 6년간 결석, 지각, 조퇴 및 결과가 한 번도 없는 자
- 108. ② 6년 정근 : 6년간 결석, 지각, 조퇴 및 결과의 합이 2회 이하인 자
- 109. ③ 1년 개근 : 1년간 결석, 지각, 조퇴 및 결과가 한 번도 없는 자

제47조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10.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가. -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사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나.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투약봉지,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예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 결석인 경우)
- 111. ② 무단결석
 - 가.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도피 등)
 - 나. -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8호의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기간
- 112. ③ 기타 결석
 - 가.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
 - 나. 이 인정하는 경우
 - 다.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절 교외생활

제48조 (교외생활) 학교 외의 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 관련법에 준하며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13.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114.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어른, 외국인,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115.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 및 지체부자유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116.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117.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118. ⑥ 한 줄서기를 생활화하며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119.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120. ⑧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 121.

제49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자녀)의 생각을 존중하며, 체벌을 지양하고 사랑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도록 한다.

- 122.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이 늦을 때
- 123. ② 학생(자녀)의 교내외생활 중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 124.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을 할 때

제4절 생활지도

제50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125.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현장 학습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126.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127.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128. ④ 매월 4일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129. ⑤ 물놀이·등산·빙판·화재·독사·독충·독초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130. ⑥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학부모로 구성된 녹색 학부모회, 학부모폴리스를 운영한다.
- 131. ⑦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51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132. ①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133. ② 관련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교육에 힘쓰며, 진학 상담 및 교육은 5-6학년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134.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135. ④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36. ⑤ 개별상담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한다.

제52조 (교외생활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한다.

제5절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53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137.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138.

제54조 (전교어린이회)

- 139. ① (목적)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가지게 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한다.
- 140. ② (권리 및 의무) 어린이회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41. ③ ~~삭제~~

- 142. ④ (활동내용)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가. - 학교생활 문제의 자치적 해결
- 나. - 학교 행사와 관련 의견 합의
- 다. - 학급회의, 위원회, 동아리활동 등에 대한 의견 교환

- 143. ⑤ (지도교사) 전교어린이회의 지도교사는 본교 어린이회 담당교사로 한다.

- 144. ⑥ (구성) 전교어린이회는 전교생을 대표하는 모임으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가. - 회장 1명 : 성별 구분 없이 6학년 1명
- 나. - 부회장 1명 : 성별 구분 없이 5학년 1명
- 다. - 각 부의 장과 차장 : 대의원 중 해당 부서에서 각 1명씩 선출
- 라. - 대의원 : 4, 5, 6학년 각 반 학급어린이회 임원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3명

- 145. ⑦ (역할) 임원 및 대의원은 회의 참석의 의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가. - 회장 : 어린이회를 대표하고 주관한다.
- 나. - 부회장 :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회의에서의 진행을 맡으며 표결 결과를 확인한다.
- 다. - 서기 :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요약보고 및 실천 결과를 확인한다.
- 라. - 각 부원(대의원) : 부서는 회의를 통해 총무부, 학습부, 생활부, 체육부, 미화부, 봉사부 등을 둘 수 있으며 각 부의 장은 각 부의 활동을 총괄하고 대의원들은 부원으로 활동한다.

- 146. ⑧ (임기)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전체 기간이며 각 부 부장과 대의원의 임기는 한 학기 단위로 하고, 각각 1기와 2기로 한다.

- 가. - 임기구분 : 1기는 1학기 시작일부터 1학기 종료일까지, 2기는 2학기 시작일부터 2학기 종료일까지(6학년은 졸업일 까지)

- 147. ⑨ (입후보자 자격) 입후보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가. - 본교에 6개월 이상 재학 중인 학생
- 나. - 본교 재학생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다. -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 모범이 되는 학생

- 148. ⑩ (임원 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가. - 매년 12월에 선거를 실시하며 당해 3학년부터 5학년 어린이가 참여한다.
- 나. - 선거는 입후보자 등록, 공고, 홍보, 소견발표, 투개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 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제반 과정을 관리한다.

- 라. - 각 부의 부장은 6학년 대의원 중에서 전교어린이회 회의를 통해 추천하여 임명한다.
- 149. ㉑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임무)
 - 가. - 위원은 5, 6학년 각 학급별 담임추천 1명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은 임원으로 출마 할 경우 자동 제명된다.
 - 나. - 임기는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출자 공고 기간까지로 한다.
 - 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6학년 위원 중 한 명, 간사는 위원 중 한 명을 추대한다.
 - 라. -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위원회가 규정한 등록, 공고, 홍보, 소견 발표, 투개표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관리한다.
 - 마.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으며, 적발 시 위원회를 열어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150. ㉒ (후보자 등록)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 가. - 회장, 부회장 후보 등록은 전교어린이회 담당 교사에게 한다.
 - 나. - 후보자 번호는 추첨으로 한다.
- 151. ㉓ (소견발표 및 홍보) 소견 발표 및 홍보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 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일자에 실시한다.
 - 나. - 소견 발표는 1인 1회 3분 이내로 한다.
 - 다. - 선거 벽보는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 라. - 선거 벽보의 크기는 전지 1/2(4절)로 하고 1인 3매 이내로 제한한다.
 - 마. - 선거 벽보의 내용은 후보자 번호, 성명, 주요 경력, 자기소개, 소견 요약 등으로 한다.
 - 바. - 소견 발표는 질서를 유지하며 남을 비방하는 발언은 금지한다.
 - 사. - 기타 학내 유세는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한다.
 - 아. - 위 사항을 어겼을 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처분한다.

- 152. ㉔ (투표)
 - 가. - 투표권자는 3, 4, 5학년 학생으로 한다.
 - 나. - 직접투표, 비밀투표로 하며 방법은 전자투표 및 기표 (○)로 한다.
 - 다. - 전 투표자에 한하여 1인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 라. - 투표용지는 일괄 인쇄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 마. - 투표용지는 투표 당일 투표 장소에서 학급별 선거인 명부를 확인한 후 1인 2매(회장용, 부회장용) 배부한다.
- 153. ㉕ (개표)
 - 가. -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다.
 - 나. - 개표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 다. - 지정된 기표 방법 이외의 사항은 모두 무효 처리한다.
- 154. ㉖ (당선자 결정) 당선자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 각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회장,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 나. - 동수의 득표자 발생 시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 155. ㉗ (당선무효 및 자격박탈)
 - 가. - 선거기간 중 또는 당선된 이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입후보 및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156. ㉘ 금품 및 향응 제공
- 157. ㉙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하였을 때
- 158. ㉚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 인권규정을 어겨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 가.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자격박탈 여부를 결정한다.
 - 나. - 임원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전교어린이회 임시회의를 열어 임원중에서 결손 임원을 보충할 수 있다.
 - 다. - 임원 자격이 박탈된 경우 차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 159. ㉛ (자격 확정) 당선자가 확정되면 개표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 교부로 자격을 확정한다.
- 160. ㉜ (보궐선거) 회장·부회장이 당선 후 다음 임기 전 결원 시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㉞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고 절차에 따라 이를 재 자격 확정한다.
- 161. ㉝ (회의) 회의는 월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 162. ㉞ (소집) 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대의원 1/2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 163. ㉟ (성원 및 의결)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164. ㊱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은 부회장이 관리기록하며 지도교사의 확인을 받고 학급회의에 안내 한다.

제55조 (학급어린이회)

- 165. ① (목적)
 - 가. - 학급어린이회 임원 및 부서는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전교어린이회의 규정에 근거 하여 담임교사가 정한다.
 - 나. - 협의 사항은 학급 전반에 관한 제반 문제의 협의와 전교어린이회 참석을 위한 사전 협의회로서의 역할을 한다.
- 166. ② (구성) 각 학급 전체 학생으로 구성하고 3학년 이상에 적용하며 1~2학년은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 167. ③ (임원 조직) 학급어린이회는 학급을 대표하는 모임으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가. - 회장은 남녀 구별 없이 1명으로 한다.
 - 나. - 부회장은 남녀 구별 없이 1명으로 한다.
 - 다. - 각 부의 부장은 필요시 학급에서 적절하게 조직 운영한다.
- 168. ④ (입후보)
 - 가. - 본교 재학 학생으로서 희망자 또는 추천을 받은 자로 전원 입후보 할 수 있다.
 - 나. - 후보자는 품행이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하되, 성적, 출결, 징계에 대한 제한 규정 없이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1차 후보로 나온 전원을 대상으로 거수로 5명까지 후보 추천 받아 비밀투표를 행한다.
 - 다. - 1학기 임원 역임자도 2학기 회장, 부회장에 직에 관계없이 입후보 할 수 있다.
- 169. ⑤ (선출방법) 선거는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로 한다.
 - 가. - 회장, 부회장 별도로 투표하여 실시한다.
 - 나. - 회장, 부회장 모두 최고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 170. ⑥ (자격 확정)

가. - 담임교사는 투표 결과를 별지 추천 양식에 의거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나. -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 교부로 자격을 확정한다.

171. ⑦ (임기) 회장·부회장의 임기는 학년도를 2기로 나누어 기별로 시행한다.

가. - 1기 : 1학기 시작일부터 1학기 종료일까지

나. - 2기 : 2학기 시작일부터 2학기 종료일까지

172. ⑧ (보궐선거) 회장·부회장이 당선 후 임기 전 결원 시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③,④,⑤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고 절차에 따라 이를 재 자격 확정한다.

제5장 학생기본생활

제56조 (목적) 본 생활규정은 올바른 생활 습관과 품성을 길러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올바른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57조 (등·하교)

173. ① 학생 등교시간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09 : 00까지 입실한다. 수업 시작시각인 9:10 이후 출석인 경우 나이스 출결관리에 지각으로 기록한다.

174. ② 등교 후에는 선생님의 허락 없이 교문 밖에는 나갈 수 없으며 필요시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외출할 수 있다.

제58조 (실내·외 생활)

175. ① 학생은 실내에서는 항상 정숙을 유지하여야 한다.

176. ② 실내에서 선생님이나 외부 손님을 만났을 경우 목례를 한 후 지나간다.

177. ③ 실내에서 걸을 때에는 우측통행을 하며 실내화 소리가 요란하게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8. ④ 실내의 모든 게시물은 학교의 공공 기물이므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며 훼손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

179. ⑤ 위 사항 외에 수업 중 핸드폰, 게임기 등 전자기 사용으로 학생으로 실내에서의 행동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다.

180. ⑥ 학생들의 실내 생활은 반드시 실내화를 신고 생활하여야 한다.

181. ⑦ 실내·외 설치되어 있는 각종 학교 시설물이나 교구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훼손 시에 그 학생이 배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별도의 처벌을 감수하여야 한다.

182. ⑧ 실외 생활에서도 실내의 다른 학생들의 수업이나 교과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183. ⑨ 이외의 기타 생활에 대하여도 학생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교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제59조 (음식물 반입) 외부에서 산 음식물의 교실 및 특별실 반입을 금지한다.

제60조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책임제 운영)

① 학교에서의 학생생활지도는 담임교사가 책임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교직원이 지도한다.

② 학급 내에서의 상담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즐거운 학급생활을 위한 다양한 학급경영을 추진한다.

④ 가정과 연계한 생활지도 방안을 모색한다.

제61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의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6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

제62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63조 (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학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제65조 (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6조 (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 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지도사,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년도의 학교 교육 환경과 실정을 고려하여 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68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 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규정의 제·개정

제69조 (규정의 제·개정)

- 184. ① 개정의 요구
 - 가. -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이상
 - 나.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이상, 교사 과반수이상
 - 다. - 보호자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라. -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185. ② 개정 절차
 - 가. - 본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며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작성한다.
 - 나. - 개정안을 일정기간 공고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70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186. 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재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
- 187.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위원 3명, 학부모위원 2명, 학생위원 3명으로 전문가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 188.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 189. ④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90. 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재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91. ⑥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 192. ⑦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193. ⑧ 개정된 규정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부 칙

제71조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 예.

▶ 학운위원장 :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회 학교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